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10. 9. 20(월) 총 2매 (본문 2)	
담당 부서	공항환경과	담당자	• 과장 김성영, 서기관 심재홍, 주무관 이호락 • ☎ (02)2669-6312, 6313
보 도 일 시	2010년 9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공항소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강화

[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9.23일부터 시행]

-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「**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**」(이하,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라 한다)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9.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'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, 동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,
 -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
-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첫째, 동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을 **김포·제주 등 민간공항**(군용공항 중 김해공항 포함)을 대상으로 하고, **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였다.**

- 둘째,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여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, 소음대책지역에서 **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과 동일하게** 방음창설치, TV 수신장애대책, 학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였다.
- 셋째, 소음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**국고지원금 신설, 시설 관리자의 부담을** 늘렸으며 이를 토대로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.
- 넷째,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고 공항별로 **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여**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**상시 감시하도록 하고**,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하여 용어상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다.
- 정부는 동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의 시행으로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강화하여 **그간 소음피해로 시달리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** 전망된다고 밝혔다.
- 동 보도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(2669-6312, 63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